

#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99호
----------	--------

제출년월일 2025. 4.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임사무 소관부서의 명칭 등을 반영하고, 근거 법규 개정 및 업무 수행부서 현행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 및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안 별표)
  - 안전담당관 → 안전기획관, 복지과 → 복지정책과, 농정과 → 농업정책과
- 나. 상위법 변경 및 업무 수행 현행화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 다.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3. 17. ~ 3. 27.(1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나) 경기도 : 기획담당관

##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를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정책기획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팀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유승민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한지혜(☎2100)

[별표]

## 사무위임사항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안전기획관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상 작성·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71조	읍·면·동장
총무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읍·면·동장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	읍·면·동장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례관리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2.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 3.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4.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 5.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6.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제9조 ~ 제9조의2, 제15조, 제 42조의2	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신고 2. 공설·공동묘지의 사용 허가 3.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읍·면·장
자원순환과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 내 투기행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8조	읍·면·장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읍·면·동장
건축과	1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 물에 한함.)	「건축법」 제79조	읍·면·동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2	건축물 해체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 해체신고서 수리 2. 현장점검(해체신고건)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해체신고건) 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수리(해체신고건) 5. 건축물 멸실신고서 수리	「건축물관리법」 제30조 <b>같은 법</b> 제30조의4 <b>같은 법</b> 제31조  <b>같은 법</b> 제33조  <b>같은 법</b> 제34조	읍·면·동장
종합허가과	1	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서 수리 2. 건축물착공신고서수리 3.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14조 <b>같은 법</b> 제21조 <b>같은 법</b> 제22조	읍·면장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수리 다만, 洞지역 가설건축물 중 建분주택(연장신고 포함)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0조 <b>같은 법</b> 시행령 제15조	읍·면·동장
	3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서 수리	「건축법」 제83조 <b>같은 법</b> 시행령 제118조	읍·면·동장
도로관리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 및 설치기간 연장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3.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4.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 제61조 및 <b>같은 법</b> 시행령 제54조  <b>같은 법</b> 제66조 <b>같은 법</b> 제40조	읍·면장
	2	사도통행제한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통행제한허가	「사도법」 제9조	읍·면장
차량등록과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 음의 권한	1.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수리 2.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3. 신규사용승인거부 4. 신규사용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5. 정비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b>같은 법</b> 제49조 <b>같은 법</b> 제9조, 제52조 <b>같은 법</b> 제28조, 제52조  <b>같은 법</b> 제37조, 제52조 명령	읍·면·동장
농업정책과	1	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고발·원상회복 이행 강제금 부과 2. 농업진흥·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단속 시정명령·고발·이행강 제금 부과	「농지법」 제42조, 63조  「농지법」 제32조, 제42조의2, 제63조	읍·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클린도시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 물허가대상은 제외) 애드 별론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읍·면장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읍·면장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읍·면장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9조	읍·면장
			5. 위반에 대한 조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	읍·면장
			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읍·면장
			7.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	읍·면장
			8.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제20조	읍·면장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u>					<u>김포시 사무위임 조례</u>							
[별표] 사무위임사항					[별표] 사무위임사항							
소 관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입관	소 관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입관	
안전 담당관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사무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상 작성· 관리	「자연재해대책 법」 제74조, <b>동법 시행령</b> 71조	읍면동장	<b>안전 기획관</b>	---	-----	---	-----	<b>같은법 시행령</b> -----	-----
	총무과	1	<b>(생략)</b>				-----	1	<b>(현행과 같음)</b>			
		2	<삭제>					2	<삭제>			
		3	<삭제>					3	<삭제>			
		4	<삭제>					4	<삭제>			
민원 여권과	1	주민등록과자료 부과 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등록 과자료 부과장수	「주민등록법」 <b>제10조제1항</b>	읍면동장	---	---	-----	-----	<b>제10조</b>	-----	
<b>복지과</b>	1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례관리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 조사 2.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 3.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4. 사례관리 대상자서 비스 점검 및 종결 5.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6. 복지 시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 관리에 관한 법」 제5조~제5조 의2 <b>동법 제2조</b> <b>동법 제3조 ~</b> <b>제4조의2</b> <b>동법 제5조</b> <b>동법 제12조</b>	읍면동장	<b>복지 정책과</b>	1	-----	-----	<b>제5조 제6조, 제9조~제9조 의2, 제15조, 제42조의2</b>	-----	
노인 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 신고 2. 공설공동묘지의 사용허가 3. 공설공동묘지 사 용료 및 수수료 장수	「 <b>장사등에관한 법률</b> 」 제8조, <b>동법시행규칙</b> <b>제2조</b> 「김포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b>제2조</b> <b>동조례 제</b> <b>16조내지</b> <b>제18조</b>	읍·면장	---	1	-----	-----	「장사 등에 관 한 법률 제8조 <b>같은 법 시행</b> <b>규칙 제2조</b>  <b>제2조 제4조</b>	-----	
	2	<b>장애인 경제적 부담</b>	<b>1. 장애인차량표지</b>	「장애인복지	읍면동장	2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소 관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업판
등록과		관한다음의 권한	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수리 2 변호관의 교부 및 봉인 3 신규사용승인 거부 4 신규사용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5 <b>장비명령</b> 6 <b>운행정지명령</b>	제8조 <b>동법 제10조</b> <b>동법 제23조 제 52조</b> <b>동법 제28조 제2조</b> <b>동법 제27조 제2조</b> <b>동법 제27조 제 52조</b>	장
보건소	1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b>1.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사항신고 폐업신고</b>	「의료법」 제33조 <b>동법 제40조</b>	보건소장
	2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약국개설등록 신청 및 변경사항 2. 약국(폐.휴.재개업) 신고 3. <b>의료기기판매업</b> 대입 등록 및 변경신고	「약사법」 제20조 <b>동법 제22조</b> 「의료기기법」 제6조	보건소장
	3	<b>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b>	<b>1.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신고</b>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b>동법 제13조</b>	보건소장
	4	<b>진단용방사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b>	<b>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b>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보건소장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b>1. 소독업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보건소장
농정과	1	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고발원상회부 2. <b>농업진흥/진흥법</b>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고발	「농지법」 제42조, 63조, 제58조 <b>「농지법」 제32조, 40조, 59조</b>	읍·면장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소 관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업판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b>같은 법 제10조</b> <b>같은 법 제23조</b> <b>같은 법 제28조 제2조</b>  <b>5 장비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b> <b>&lt;삭제&gt;</b>	----- --
----	1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2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3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4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5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b>&lt;삭제&gt;</b>
<b>농업정책과</b>	1	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고발원상회부 2. <b>농업진흥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에 대한 단속</b> <b>시정명령</b> <b>고발이행</b> <b>강제금 부과</b>	「농지법」 제42조, 63조  <b>「농지법」 제32조, 40조, 59조</b>	「농지법」 제42조, 63조  <b>「농지법」 제32조, 제42조의2, 제63조</b>
	2	삭제			-----
	3	삭제			
	4	삭제			
	5	삭제			

소 관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업권	소 관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업권
		<삭>					5 <삭>				
클린 도시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중 가 로형간판, 돌출 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단 건 축법에 의한 공 작물허가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 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	읍면장		---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u>동법 제3조</u> <u>동법 시행령</u> 제3조 및 제3조	읍면장					<u>같은 법 제3조</u> <u>같은 법 시행령</u> 제3조 및 제3조	-----
			3 허가및 신청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 에 한함	<u>동법 제3조</u> <u>동법 시행령</u> 제3조 및 제3조	읍면장					<u>같은 법 제3조</u> <u>같은 법 시행령</u> 제3조 및 제3조	-----
			4 광고물등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 항 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 에 한함	<u>동법 제3조</u> <u>동법 제3조</u>	읍면장					<u>같은 법 제3조</u> <u>같은 법 제3조</u>	-----
			5 위반에 대한 조 치 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 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u>동법 제3조</u>	읍면장					<u>같은 법 제3조</u>	-----
			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취소 (단 읍면장이 허 가 또는 신청한 광고 물에 한함)	<u>동법 제3조</u>	읍면장					<u>같은 법 제3조</u>	-----
			7 허가 신고 안전 점검에 따른 수 료의 징수 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u>동법 제7조</u>	읍면장					<u>같은 법 제7조</u>	-----
			8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 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함	<u>동법 제10조의</u> <u>3</u> <u>동법 제20조</u>	읍면장					<u>같은 법 제10조</u> <u>의</u> <u>같은 법 제20조</u>	-----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별표]

## 사무위임사항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안전담당관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작성·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71조	읍·면·동장
총무과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읍·면·동장
	2	<삭제>			
	3	<삭제>			
	4	<삭제>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읍·면·동장
복지과	1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례관리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2.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 3.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4.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 5.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6.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 제5조~제5조의2 동법 제6조, 동법 제9조~제9조의2 동법 제15조, 동법 제42조	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신고 2. 공설·공동묘지의 사용허가 3.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동조례 제16조내지 제18조	읍·면·장
	2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1.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및 사후관리 2. 장애인 할인카드 및 식별표지 발급 3.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읍·면·동장
자원순환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폐기물투기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8조	읍·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제6조의3	읍·면·동장
건축과	1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 물에 한함.)	「건축법」제79조	읍·면·동장
	2	건축물 해체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 해체신고서 수리 2. 현장점검(해체신고건)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해체신고건) 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수리(해체신고건) 5. 건축물 멸실신고서 수리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제30조의2 동법 제31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읍·면·동장
	3 <삭제>				
종합허가과	1	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서 수리 2. 건축물착공신고서수리 3.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제14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읍·면·동장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수리 다만, 洞지역 가설건축물 중 建本주택(연장신고 포함)은 제외한다	「건축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읍·면·동장
	3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서 수리	「건축법」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읍·면·동장
도로관리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 및 설치기 간 연장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3.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4.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동법 제66조 동법 제40조	읍·면·동장
	2	사도통행제한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통행제한허가	「사도법」제7조	읍·면·동장
차량등록과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사 용폐지 신고수리 2.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3. 신규사용승인거부 4. 신규사용승인에 대한 이의 신청 5. 정비명령 6.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9조, 제52조 동법 제28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동법 제37조, 제52조	읍·면·동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보건소	1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사항신고, 폐업신고	「의료법」제33조 동법 제40조	보건소장
	2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약국개설등록신청 및 변경사항 2. 약국(폐.휴.재개업) 신고 3.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등록 및 변경신고	「약사법」제20조 동법 제22조 「의료기기법」제16조	보건소장
	3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제13조	보건소장
	4	진단용방사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보건소장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독업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보건소장
농정과	1	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고발·원상회복 이행 강제금 부과 2. 농업진흥/진흥박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고발	「농지법」 제42조, 63조, 제58조 「농지법」 제32조, 40조, 59조	읍·면장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클린도시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중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 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허가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소 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5. 위반에 대한 조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에 한함) 7.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8.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함)	동법 제3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0조의3, 동법 제20조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